의 안 번 호	1706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1. 2. 9.(화)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2. 9.(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2. 19.(금)

2. 제안설명 요지(박채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 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추가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변경

다.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3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 인구감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2008년 본 조례를 제정 이후 아기 출산시 출산양육에 따른 지원금을 매년 지원 해 오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혜자의 상황, 보건복지부 협의 및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고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